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이동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폐지조례안
-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안
-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1. 4. 3. ~ 4. 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4. 7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yungjee1103@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혜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425호
----------	--------

발의연월일 : 2021. 4. 2.

발 의 자 : 박혜정 · 이현재
김영진 의원

1. 제정이유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운영중인 순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안 제1조)
- 나. 정의. (안 제2조)
- 다. 지원사업 등. (안 제3조)
- 라. 준용. (안 제4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 나.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 다. 타 지자체 입법례 : 전국 65개 지자체(광역시1, 기초64 / 전남 : 고흥, 보성)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된 순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순천시 재향경우회”란 지역 치안질서 유지 등을 위해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순천시장은 순천시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3. 시민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4. 호국영령 추모 관련 사업
5. 이 밖에 순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관련법령**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67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鄉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과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도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나. 조례제정 현황

※ 전국 : 65 (광역 1, 기초 64) / 전남 2 : 고흥,보성

순번	법령명	지역명	시행일자
1	가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가평군	2020. 12. 23.
2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강릉시	2021. 1. 13.
3	강화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강화군	2020. 12. 28.
4	거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거제시	2020. 12. 29.
5	고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고성군	2020. 11. 23.
6	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고흥군	2021. 3. 26.
7	공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	2020. 11. 2.
8	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	2021. 1. 4.
9	구리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구리시	2021. 3. 12.
10	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금산군	2021. 2. 15.
11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김천시	2020. 12. 31.
12	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남동구	2021. 3. 12.
13	남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2020. 10. 29.
14	남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	2015. 11. 11.
15	논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논산시	2020. 11. 10.
16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2021. 3. 10.
17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2021. 1. 1.
18	동해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동해시	2021. 3. 12.

19	무주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무주군	2021. 2. 22.
20	보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보성군	2021. 2. 16.
21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연제구	2021. 2. 8.
22	부산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중구	2021. 2. 2.
23	부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부여군	2020. 12. 22.
24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부천시	2021. 2. 8.
25	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2020. 12. 10.
26	서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2020. 12. 10.
27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강북구	2020. 11. 13.
28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관악구	2021. 2. 18.
29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구로구	2020. 11. 10.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금천구	2020. 12. 31.
3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동작구	2021. 3. 11.
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	서초구	2021. 1. 13.
3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성북구	2020. 11. 5.
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2021. 3. 18.
35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중랑구	2021. 1. 7.
36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2020. 8. 24.
37	속초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속초시	2020. 8. 14.
38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2021. 3.

			19.
39	아산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아산시	2020. 12. 15.
40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2020. 12. 30.
41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안성시	2020. 10. 14.
42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양평군	2020. 11. 16.
43	연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2020. 12. 24.
44	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예산군	2020. 12. 24.
45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오산시	2020. 11. 6.
46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2020. 9. 24.
47	의정부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2020. 9. 22.
48	익산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익산시	2020. 12. 30.
49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계양구	2021. 2. 26.
5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미추홀구	2021. 1. 11.
51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부평구	2020. 11. 9.
52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서구	2020. 5. 18.
5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연수구	2020. 11. 9.
54	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2020. 10. 7.
55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중구	2020. 10. 12.
56	전라남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2020. 12.

			31.
57	정선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정선군	2021. 3. 12.
58	정읍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정읍시	2021. 2. 17.
59	진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진천군	2021. 2. 16.
60	충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충주시	2021. 2. 26.
61	통영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통영시	2020. 12. 29.
62	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포천시	2020. 12. 23.
63	함안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함안군	2021. 2. 25.
64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함양군	2015. 10. 1.
65	횡성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횡성군	2020. 6. 30.

순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장속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426호
----------	--------

발의연월일 : 2021. 4. 2.

장속희 · 허유인 · 이현재

발 의 자 : 이복남 · 박혜정 · 오행숙

김미연 · 김미애 · 김영진 의원

1. 제정이유

-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었으나, 노인 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대부분이 열악한 노동 조건에 놓여 있음. 이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 나.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장기요양원의 신분보장 (안 제4조 ~ 제5조)
- 다.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처우개선 등 사업 (안 제6조 ~ 제8조)
- 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등 (안 제9조 ~ 제12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수반

순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등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및 장기요양보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순천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상담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 증진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 29., 2013. 6. 4., 2017. 3. 14.>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1. 25., 2019. 12. 3.>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5.>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전문개정 2007. 8.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73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11., 2020. 3. 31.>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0. 3. 3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 3. 31.>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장기요양요원이 이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11.>

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신설 2018. 12. 11.>

⑥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순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계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3423호
----------	--------

발의연월일 : 2021. 4. 2.

발의자 : 박계수 · 나안수
김영진 · 오행숙
장숙희 · 김미연
이현재 의원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시민의 인성 덕목 함양을 통해 미래 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순천시민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인성교육지원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인성교육진흥법」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순천시민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덕목”이란 정명(正名),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실시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인성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시 소속기관 등은 정기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성교육 등에 대한 시행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교육 핵심가치·덕목 등 확산에 관한 사항
3. 가정 및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지역의 인성교육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인성교육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순천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에게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참여 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거나 캠페인 활동 등을 전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시설이나 자료에 대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그 밖의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예산 지원) 시장은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기관 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인성교육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인성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성교육 시행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실천·확산을 위한 행정 및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순천시 인성교육 업무담당 국장
3. 학부모 관련 단체 또는 인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성교육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인성교육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지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련법령 등 자료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인성교육 예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창의·인성교육 관련 조례 현황 : 80지자체**

- 19 광역시 : 광주광역시 동구 외
- 12 특별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
- 1 특별자치시 : 세종시
- 2 도 : 충청남도, 경기도
- 30 시군 : 여수시 등 30개 기초지자체
- 16 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등 16개 교육청

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오행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427호
----------	--------

발의연월일 : 2021. 4. 2.

오행숙 · 김미연 · 장숙희

발의자 : 박혜정 · 오광목 · 나안수

남정옥 · 김영진 · 허유인

김병권 의원

1. 제정이유

- 지구온난화현상으로 매년 폭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2018년 9월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에 폭염이 추가되었음. 이에 폭염으로부터 순천시민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 나. 종합계획 수립 및 관계 부서의 협조 (안 제4조 ~ 제5조)
- 다. 폭염취약지역 예찰 · 관리활동, 재난도우미 운영, 무더위쉼터 운영 · 지원 (안 제6조 ~ 제8조)
- 라. 폭염취약계층 지원, 폭염저감시설 지원, 폭염 안전교육 실시,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 제12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 · 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수반

순천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 일 최고기온이 33.0 °C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폭염경보 : 일 최고기온이 35.0 °C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열섬 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순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세대,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마. 그 밖에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순천시 폭염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관리활동)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통장·반장
2.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순천시의 방침에 따라 폭염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 이상 유무와 안전 상태 확인 등 건강 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
2. 냉방 시설의 수선, 냉방 용품·식수·비상약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시장은 도시열섬화방지 및 온열질환예방 차원에서 도심속 쿨존을 만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1. 쿨루프 및 차열성도로포장 등 열차단제 시설
2.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3. 그늘막시설
4. 에어커튼 등 승차대기 시 정류장 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전문개정 2010. 6. 8.]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도 및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별 지원 기능에 따라 신속한 지원 체제를 가동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1. 3. 7.]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안수 의원 대표발의)

의 변 안 호	제3424호
------------------	--------

발의연월일 : 2021. 4. 2.

발 의 자 : 나안수 · 유영갑
김미애 · 박계수
김병권 · 허유인
이영란 의원

1. 개정이유

- 공공시설 내 동상, 기념탑 등 무분별한 조형물의 건립을 막아 공공시설의 공적기능 강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 및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조형물의 정의 보완(안 제2조제2호)
- 주관부서 및 관리부서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제5호)
-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세분화
 - 건립대상 선정기준(안 제4조), 위치 및 제작기준(안 제5조), 건립 부지면적(안 제6조)
-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조항 신설(안 제9조~안 제11조)
(※ 당초 : 순천시 경관위원회에서 기능 대행)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 나. 벽화·분수대·인공폭포 등 환경시설물
 - 다. 상징탑·기념비·동상 등 상징조형물
4. “주관부서”라 함은 순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현황 관리 등의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라 함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건립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을 받아 사전 검토 후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건립대상 선정기준) 공공조형물 중 동상 등 인물과 관련된 시설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와 제6조를 제7조와 제8조로 하고 제5조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3.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
4. 지역 정체성 반영
5. 독창성·조형성·내구성·안정성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건립 부지면적) 제5조제3호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되 순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안전별 심의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9조(종전의 제7조) 본문 중 “두되, 그 역할과 기능은 순천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4호 각호”를 “제4조부터 제6조”로 한다.

제8조와 제9조를 제12조와 제13조로 하고 제10조와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이내
2.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련기관·단체 관계자 등 5인 이내
3. 주관부서 및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관리부서의 국장 2명 이내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공공조형물</u>”이란 공공시설 안의 <u>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인공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u></p> <p>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4.~5.(생략)</p> <p>제4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p> <p>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p> <p>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p> <p>4.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p> <p>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p> <p>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p> <p>7. 주변 환경과의 조화</p> <p>8. 역사적 자료, 고증을 통한 객관적 평가에 대한 시민 공감(인물인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조 (정 의)</p> <p style="text-align: center;">-----</p> <p>1. (현행과 같음)</p> <p>2. “<u>공공조형물</u>”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p> <p>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p> <p>나. 벽화·분수대·인공폭포 등 환경시설물</p> <p>다. 상징탑·기념비·동상 등 상징조형물</p> <p>3. (현행과 같음)</p> <p>4. “<u>주관부서</u>”라 함은 순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현행 관리 등의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p> <p>5. “<u>관리부서</u>”라 함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건립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을 받아 사전 검토 후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p> <p>6.~7.(현행 제4조부터 제5조까지와 같음)</p> <p>제4조(건립대상 선정기준) 공공조형물 중 동상 등 인물과 관련된 시설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p> <p>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p> <p>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p> <p>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5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 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공의 가치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p> <p>2.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p> <p>3.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p> <p>4. 지역 정체성 반영</p> <p>5. 독창성·조형성·내구성·안정성</p> <p>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6조(건립 부지면적) 제5조제3호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되 순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p>			

제5조~제6조(생략)

제7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역할과 기능은 순천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이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2.~5.(생략)

< 신 설 >

< 신 설 >

제8조~제9조(생략)

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7조~제8조(현행 제5조부터 제6조까지와 같음)

제9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 제4조부터 제6조-----

- 2.~5.(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순천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이내
 2.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련기관·단체 관계자 등 5인 이내
 3. 주관부서 및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관리부서의 국장 2명 이내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 할 수 있다.

제12조~제13조(현행 제8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6. 30.]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1747호, 2017. 6. 30., 일부개정]

전라남도 순천시(도시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의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인공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었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5.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순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공공조형물을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4.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주변 환경과의 조화
8. 역사적 자료, 고증을 통한 객관적 평가에 대한 시민 공감(인물인 경우)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등)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순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서에 건립의 필요성, 건립 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이 포함된 의견서

를 첨부하여 제7조에 따른 순천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한다.

③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하고, 시장은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④ 그 밖에 공공조형물 건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역할과 기능은 순천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이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공공조형물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설치·이전·교체·해체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지정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
2.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 점검
3. 훼손·파손·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②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22호, 2017. 04. 2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 결정된 공공조형물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건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47호, 2017. 0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428호
----------	--------

발의연월일 : 2021. 4. 2.

김병권 · 이현재

발 의 자 : 이영란 · 오행숙

김미연 · 허유인 의원

1. 개정이유

- 순천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일반에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표현의 간결·명료화 및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장 표지 관련 대상으로 부설주차장을 추가하고 표현의 간결·명료화 및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정비 (안 제7조제2항)
- 순천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일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신설 근거 마련 (안 제14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노외주차장” 을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 으로,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안내표지 기재” 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을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 제공)”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 및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운영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고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생략)</p> <p>② 노외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u>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u></p> <p>제14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p> <p>① <u>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u></p> <p>② <u>일반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표지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노외 또는 부설주차장----- -----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안내표지 기재 ----- -----.</u></p> <p>제14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 제공) ① <u>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u> 2. <u>그 밖에 시장이 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p>② <u>제1항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 및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u></p> <p>③ <u>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운영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고시한다.</u></p>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1>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공영주차장 인근 상인조직
 4. 주민협의체 등 인근 주민자생단체 중 비영리 단체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정 방법	위탁료	납부 방법
제1항 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제3호, 제4호의 경우	수의계약	위탁료 산출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1천만원이하 소액일 경우 일사납 가능)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

- ④ 제3항에 따른 위탁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⑤ 제4항의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차장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 임야, 잡종지, 주차장 등일 경우에는 인근토지의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모든 준수사항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도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위·수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중 관리수탁자가 주차장관련 제반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

탁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등) ①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노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이용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한 시간이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 30분 단위로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위반한 경우 : 실제 주차요금의 2배부터 4배까지

③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면제한다.

1.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광주민중화운동부상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
3.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운전한 자동차 <개정 2020. 5. 13>
4.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한 자동차
5.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가 운전한 자동차
6.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전부개정 2020.06.30>

⑤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와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중 성실납세필증 표시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3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 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주차거부금지등)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판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③ 1일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을 이용하려는 자는 주차장관리자와 사전에 계약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구역, 사유 등을 해당 주차장에 사전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폭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8>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함은 경찰서에서 상시 상용하는 순찰차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구획선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 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주차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③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확장형으로 별표 5에 따른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4(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 및 법 제17조에 따라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유료운영 시설로 감시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2. 관리인이 상주하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시간 측정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19.12.31]

제11조(주차장설치 심의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 수요의 장기 예측

제11조의2(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등)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3(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도시재개발사업
4. 산업단지개발사업
5.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3장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의 각목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하며,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 및 농업용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0. 06. 30>

②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2항과 제3

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2항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4에서 정한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의13제6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을 완화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06. 30>

1. <삭제 2020.06.30>

2. <삭제 2020.06.30>

3. <삭제 2020.06.30>

4. <삭제 2020.06.30>

5. <삭제 2020.06.30>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일반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표지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영 제10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토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 제6항 단서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2이상의 필지는 평균가액으로 한다)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곱하여 산정 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 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6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 및 주차장 무상사용) ①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2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은 20년 이내로 하되, 기간이 만료될 시는 기간 만료당시의 시설 설치비를 재산정하여 재계약한다.

제16조의2(장애인전용 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은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입구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시행령 제6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종류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 1면 이상, 주차대수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의 주차 대수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주차장의 설치제한)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 설치제한의 기준 등을 시보에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4장 보조금의 지원

제17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2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 등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2.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3.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심동지역 및 읍면지역 택지개발지구에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4. 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공공개방을 위해 주차장을 정비 및 설치하는 경우
5.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②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용도 제한)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주차장은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주차장을 조성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주차장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시설물 변경에 따라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된 경우
3. 공사 완료 후 담장 경계에 임의로 대문, 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5년 이내에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고 제1항의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관한 특약이 없을 때에는 당초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과징금을 부과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5장 보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896호, 2018.04.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부칙<조례 제2086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조례 제2121호, 2020.05.13>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⑨ 생략

⑩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제3호 중 “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 ” 을 “ “다자녀가정 세대증” ” 으로 한다.

⑪ ~ · 생략부칙<조례 제2157호, 2020.06.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

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조례 제2203호, 2020.11.1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340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제정이유

- 시민민주주의 가치실현과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시민주권위원회 구성·운영 등 근거 마련
- 시민들이 자신의 일상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시정에 직접 참여·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정의(안 제1조~제3조)
- 시민주권위원회 설치·기능,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0조)
-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9조)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2021. 2. 15. ~ 3. 8.)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2. 19.(여성가족과-4253)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 위원회 자격조건 완화

- **통계연보(한국교육개발원, 2019)** 2018년 대학교원수 성별비율 남67%, 여33% / 직급별 (조교수 남14.7%, 여11.8%), 부교수(남15.3%, 여4.9%)로 성별격차가 있음. 따라서 현실적인 제약을 해결하고 성별균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 자격조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개선하기** 바람.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제6조(구성) ①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당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4.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 4명 5.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 2명	제6조(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당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4.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 4명 5.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 2명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2. 8.(시민주권담당관-432)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2. 15.(기획예산실-2316)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2. 15.(순천시 공고 제2021-348호)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시민주권 활성화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시민주권”이란 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공정책 계획·결정·집행·평가 과정 등에 시민들이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시민민주주의”란 시가 추진하는 공공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 형태의 시정 운영 체계를 말한다.
4. “공론화”란 시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의 계획·결정·집행·평가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공론을 형성해 가는 일련의 시민민주주의 과정을 말한다.
5. “정책토론”이란 시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의 계획·결정·집행·평가 등의 과정에서 정책 제안 수렴, 공공갈등 해소 등을 위해 전문가, 이해관계인, 시민 등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토론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갈등 및 시민참여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례에 따르고,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토론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시민주권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주권 활성화 및 시민민주주의 시책의 지속적 추진과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주권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주권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목표

2.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과제발굴 및 추진
 3.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등 민주적 공론화 과정 운영
 4. 시민과 공무원의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역량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주권 활성화 및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사항 등
- ③ 시장은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행정절차와 제도를 마련·개선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시민주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주권 활성화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민주권 활성화 계획의 수립·조정 에 관한 사항
2.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행정제도 개선사항
3.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이 청구한 정책토론 등의 공론화 여부에 관한 사항
5.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실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당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시 소속 자치행정 및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명
3.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1명
4.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하

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 4명

5.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 2명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과 법률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명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주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미리 회피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생략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시장은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정책토론 실시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정책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토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론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정책토론의 기간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충분한 토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정책토론의 진행은 공개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정책토론의 공정한 진행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토론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시 소관이 아닌 국가 사무 등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이 확정되어 추진 중이거나 처리가 이미 종료된 사업 등으로 행정지체나 비용부담 등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사항

7. 그 밖에 공론화가 오히려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공익성,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3조(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론화 또는 정책토론의 실무 운영을 위하여 사안별로 공론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 및 용역 등을 통해 구성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활동을 수행한다.

1. 정책토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전반에 관한 사항
2. 정책토론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3. 정책토론의 진행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에 관한 사항
4. 정책토론 실시 결과 및 권고안 등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토론 개최 결과에 따른 시정반영 평가, 환류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회의참석 및 자료의 협조 등) 추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전문가, 해당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와 추진위원회, 실무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 수행에 알게 된 정보,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준용) 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0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개정이유

-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구체화, 과제 선정단계의 유사·중복 검증, 용역과제 사후 절차이행 의무화 등을 통해 순천시 연구용역의 공정성·책임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2. 주요내용

- 심의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해충돌 방지 (안 제9조)
- 과제 선정단계에서의 유사·중복 검증 절차 확립(안 제13조)
- 연구용역 담당 공무원의 역할 명시를 통한 책임 관리 강화(안 제14조)
- 결과 공개 확대에 따른 용역과제의 투명성 제고(안 제15조)
- 용역결과 평가, 활용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연구 부정행위 검증(안 제17조)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2. 18. ~ 3. 1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2. 26.(여성가족과-4818호)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p>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서는 제도 운영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에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이 성별영향평가서를 검토하도록 규정하여 수탁 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성별영향평가를 실행하고, 용역 결과보고서와 함께 성별영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p>	<p><input type="checkbox"/>수용 <input type="checkbox"/>일부수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불수용</p>	<p>용역 실명제의 목적은 용역 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 담당 공무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담당 공무원이 성별영향평가를 실행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판단함.</p>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2. 18.(순천시 공고 제 2021-410호)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원이 공정한 심의” 를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 로, “이를” 을 “기피 여부를” 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를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척 또는 기피” 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으로, “회피할 수 있다” 를 “회피하여야 한다” 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 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할 경우

제13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안건을 제출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또는 매체를 통해 제2항제1호에 따른 용역과제 중복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검토결과 기준에 유사한 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성이 포함된 검토보고서를 해당 안건에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온나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2.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3. 국회도서관
4. 기타 용역관리 시스템 등

제14조제2항 중 “한다” 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되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시장” 을 “사업부서의 장” 으로, “그” 를 “별지2의 서식에 따라 그” 로, “용역결과” 를 “별지3의 서식에 따라 용역결과” 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후단에 따라 정책연구 결과 평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평가결과보고서를” 을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 사항을” 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에 대해 심의하고 미흡할 경우 사업부서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⑤ 사업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표절 등)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통보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판단 후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용역 심의 요청서

제출번호

제 호

용역명

제 출 자

제출년월일

년 월 일

연구용역명

타 기관 공동수행 여부

-
-

제안이유

-
-

사업목적

-
-

외부용역의 필요성

-
-

사업내용

-
-
-

용역기간 :

계약방법

-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
-
-

※ 별첨 : 관련서류

연구용역 추진계획 및 유사연구사례 검토보고서

심의 안건 (용역명)	
용역추진 계획	◦ 시행시기 : ◦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 - - -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 ◦ ◦
유사 선행연구 내역 (최근 5년간)	◦ 용역명 ◦ 주요내용 - - -
기존 연구용역과 중복 검토 여부	◦ ◦
기존 연구 용역과의 차별내용	◦ ◦

연구용역 평가서

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방식	1. 위탁형 ()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경쟁입찰() 2. 수의계약()	연구기간	~ (개월)			
주요 연구결과						
평가항목	평가 의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 (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 (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정책 반영 가능성 등)						
평가 결과(총평)						
평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담당관(소속) : ○○○ (서 명) ◦ 외부전문가(소속) : ○○○ (서 명) 					

[별지 제3호서식]

연구용역 결과 활용보고서

연구용역명			
연구 기간		연구사업비	천원
목 적			
활용내역			
활용효과			
추후 활용계획			
문제 점 및 대책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u>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관련성이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u></p> <p>② 당사자는 <u>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u>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u>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u></p> <p>③ 위원은 <u>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u></p>	<p>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u>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u> 2. <u>위원 또는 위원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u> 3. <u>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할 경우</u> <p>② ----- <u>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u> <u>----- 기피 여부를 -----</u> <u>-----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p> <p>③ ----- <u>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u> <u>----- 회피하여야 한다.</u></p>

제14조(용역 실명제) ① (생략)

②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사업부서의 국·소장, 과·소장, 팀장, 실무담당자로 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15조(용역 이행 및 공개) ① (생략)

② 사업부서의 장은 용역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용역결과의 평가) ① 시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그

제14조(용역 실명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용역 이행 및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되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제17조(용역결과의 평가) ① 사업부서의 장----- 별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생략)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정책연구 결과 평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지2의 서식에 따라 그 -----
----- 별지3의
서식에 따라 용역결과 -----.

<후단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 사항을-----

-----.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에 대해 심의하고 미흡할 경우 사업부서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표절 등)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위원회는 평가서를 심사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통보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 따라 판단 후 순천
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
출하여야 한다.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0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1항)
 - 현행 “5인” 에서 “7인” 으로 2인 증원
- 민간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1항제1호)
 - 현행 “3인” 에서 “5인” 으로 2인 증원
-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2항제1호)
 - 현행 “3인중” 에서 위원장 선임하던 것을 “5인중” 에서 선임
-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2항제2호)
 - 현행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중” 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중” 으로 개정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제3항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2. 15. ~ 3. 8.)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2. 9. (여성가족과-332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2. 15. (기획예산실-228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2. 15. (순천시 공고 제2021-380호)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인” 을 “7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인” 을 각각 “5인”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호” 를 “제1항제2호”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u>5인</u>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u>3인</u>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p> <p>2.·3.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p> <p>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u>3인</u>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p> <p>2. 부위원장은 <u>제2호</u>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2조(구성) ① ----- ----- ----- <u>7인</u>----- ----- ----- -----.</p> <p>1. <u>5인</u>----- ----- ----- ----- -----.</p> <p>2.·3.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u>5인</u> ----- -----.</p> <p>2. ----- <u>제1항제2호</u> ----- -----.</p> <p>③ (현행과 같음)</p>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0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개정이유

- 자연마을의 행정리 승격 요구에 따라 이통반을 조정하여 원활한 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순천시 이·통장연합회 각종 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하여 원활한 이·통장 업무수행 및 회의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각종 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제13조)
- 행정리 승격(반→리) 3개소(안 별표 1)
 - 승주읍 구강 택촌연동리 신설
 - 황전면 월산 약수리, 덕림 화평리 신설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3. 2. ~ 2021. 3. 22.)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3. 16.(여성가족과-621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2. 19.(자치혁신과-2150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2. 25.(기획예산실-297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3. 2.(순천시 공고 제2021-505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범위안” 을 각각 “범위” 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이·통장이 전라남도 또는 순천시 이·통장연합회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및 워크숍 등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중 승주읍 사제리의 제2반 택촌(연동)을 삭제하고, 사제리 다음에 택촌연동리 제1반 택촌연동을 신설하며, 승주읍 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승주읍				
⋮	⋮		⋮	⋮
계	14	33	46	

별표 1 중 황전면 월산리의 제2반 약수를 삭제하고, 월산리 다음에 약수리 제1반 약수를 신설하며, 구룡리의 제2반 화평을 삭제하고, 구룡리 다음에 화평리 제1반 화평을 신설하며, 황전면 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황전면				
⋮	⋮		⋮	⋮
계	16	45	52	

별표 1 중 총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총계	163	466	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실비변상) 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u>범위안</u>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p> <p>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u>범위안</u>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p> <p>③ 이·통반장에게는 예산의 <u>범위안</u>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u><신 설></u></p>	<p>제13조(실비변상) ① ----- ----- -- <u>범위</u>----- ----- -----.</p> <p>② ----- <u>범위</u>----- -----.</p> <p>③ ----- <u>범위</u>----- -----.</p> <p>④ <u>이·통장이 전라남도 또는 순천시 이·통장연합회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및 워크숍 등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별표 1]

읍면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승주읍	구강리	사제	제1반	사제
			제2반	택촌(연동)
		<신설>	<신설>	<신설>
⋮	⋮	⋮		⋮
계	14	32	46	
황전면	월산	월산	제1반	월산
			제2반	약수
		<신설>	<신설>	<신설>
⋮	⋮	⋮		⋮
	덕립	구룡	제1반	구룡
			제2반	화평
		<신설>	<신설>	<신설>
⋮	⋮	⋮		⋮
계	16	44	52	
⋮	⋮	⋮		⋮
총계	163	463	703	

[별표 1]

읍면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승주읍	구강리	사제	제1반	사제
			<삭제>	<삭제>
		택촌연동	제1반	택촌연동
⋮	⋮	⋮		⋮
계	14	33	46	
황전면	월산	월산	제1반	월산
			<삭제>	<삭제>
		약수	제1반	약수
⋮	⋮	⋮		⋮
	덕립	구룡	제1반	구룡
			<삭제>	<삭제>
		화평	제1반	화평
⋮	⋮	⋮		⋮
계	16	45	52	
⋮	⋮	⋮		⋮
총계	163	466	70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13조
 - 이·통·반장 임명(3개 리)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지급기준과 사업량을 바탕으로 함
- 원활한 이·통·반 관리를 위한 이·통·반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이통반장 증감 현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비고
이통장	857	860	3	
반 장	2,357	2,357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65,220	-9,060	-14,040	-14,040	-14,040	-14,04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65,220	9,060	14,040	14,040	14,040	14,04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시 비	65,220	9,060	14,040	14,040	14,040	14,04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예산 : 14,040천원/연간 (이장 3명)
- 산출기초
 - 이장 기본수당 : 300,000원×12월×3명=10,800,000원
 - 이장 상여금 : 300,000원×2회(설, 추석)×3명=1,800,000원
 - 이장 회의참석 수당 : 20,000원×2회(월)×12월×3명=1,440,000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혁신과 과장 허국진(☎749-5453)
자치행정팀장 김종환(☎749-5625)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0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개정이유

-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

※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2020.12.)'에 따라 정비

2. 주요내용

- 수수료 납부 방법 규정(안 제3조)
 - 수수료 등을 원칙적으로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예외적으로 현금 등 다른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8조)
 - “관하여 필요” → “필요”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3. 2. ~ 3. 22.)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2. 26.(여성가족과-485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2. 25.(기획예산실-228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2. 26.(순천시 공고 제2021-508호)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별표 1의 수수료 납부증명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 을 “순천시장” 으로 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수수료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u>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u></p> <p>② <u>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기 등의 고장으로 수입증지로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u></p> <p>③ (생략)</p> <p>④ <u>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서류에 별표 1의 수수료 납부증명에 날인하여 제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u></p> <p>제5조(계기의 관리) ① <u>시장은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계기를 신규로 사용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사용일, 계기의 고유번호·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8조(시행규칙) <u>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3조(수수료 납부) ① ----- ----- ----- <u>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u></p> <p>② <u>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별표 1의 수수료 납부증명을 날인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제5조(계기의 관리) ① <u>순천시장</u>----- -----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시행규칙) ----- <u>필요</u> -----.</p>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1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개정이유

- 순천업사이클센터 운영조례(대부료율)와 관련한 공유재산 대부료율 근거 마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기업부지의 공유재산 수의매각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 【신설】 순천업사이클센터 대부료율(평정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 규정
(안 제28조제4항제7호)
- 【신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기업부지에 편입된 공유재산
수의매각 규정(안 제40조제9호)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2. 15. ~ 3. 7.)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2. 9.(여성가족과-333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2. 10.(기획예산실-224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2. 15.(순천시 공고 제2021-363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28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제40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 제

2. ~ 8. (생 략)

<신 설>

-----.

2. ~ 8. (현행과 같음)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
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
으로서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
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341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폐지이유

- 2019. 7. 1.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조례반영으로 제정 목적 상실

2. 주요내용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폐지

3. 폐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2. 1. ~ 2. 22.)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1. 29.(기획예산실-156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2. 1.(순천시 공고 제2021-275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폐지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1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개정이유

- 중복 표현되어 있던 지급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명확하게 정리
- 명예수당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중복 표현되어 있던 지급 제외 조항 삭제(안 제3조제2호)
-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정리(안 제4조제2호)
- 생활조정수당 지급 조항 신설(안 제4조제2항)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용어 수정 및 띄어쓰기 정비
- 신청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 성별표기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란 추가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3. 2~ 3. 22.)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2. 26.(여성가족과-481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2. 26.(기획예산실-300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3. 2.(순천시 공고 제2021-521호)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65세”를 “만 65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 38조”를 “법 제3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제1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은 대상자”로, “지급”을 “지급(단, 2008년 이후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는 지급하지 않는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신설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u>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 ----- ----- -----.</p>
<p>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순천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u>만65세</u>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1. 참전유공자라도 <u>법 제 38조</u>에 따라 국가보훈청장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p> <p>2. 「<u>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u>보상금을 받는 사람</u></p> <p>3. (생략)</p>	<p>제3조(지원대상) ----- ----- ----- <u>만 65세</u> ----- ----- ----- -----.</p> <p>1. ----- <u>법 제38조</u>----- ----- -----</p> <p><삭 제></p> <p>3.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원사업)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4조(지원사업) ① ----- ----- ----- ----- -----.</p>

1. (생략)
2.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는 사망위로금 : 300,000원 지급
3.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신 설>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은 대상자-----
----- 지급
(단, 2008년 이후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3. 그 밖에 -----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성명	생년월일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참전유공자과 관계	신청서 연립일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p>신청서 참전유공자 과목 고액 제1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신청서 장 귀하</p>			
구비서류 :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참전유공자의 사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신청 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참전유공자와 관계	신청서 연립일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p>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p> <p>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p> <p>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p> <p>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p> <p>4. 개인정보의 파기처리방법</p> <p>5. 개인정보의 제공</p> <p>6. 개인정보의 위탁</p> <p>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p> <p>8. 개인정보의 보호책임자</p> <p>9. 개인정보의 처리의 거부권</p> <p>10. 개인정보의 처리의 정지권</p> <p>11. 개인정보의 처리의 삭제권</p> <p>12. 개인정보의 처리의 복구권</p> <p>13. 개인정보의 처리의 정지권</p> <p>14. 개인정보의 처리의 복구권</p> <p>15. 개인정보의 처리의 정지권</p> <p>16. 개인정보의 처리의 복구권</p> <p>17. 개인정보의 처리의 정지권</p> <p>18. 개인정보의 처리의 복구권</p> <p>19. 개인정보의 처리의 정지권</p> <p>20. 개인정보의 처리의 복구권</p>			확인
<p>신청서 참전유공자 과목 고액 제1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신청서 장 귀하</p>			수수료 없음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1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조정수당 지급 조항 신설(안 제11조제3항)
 -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정비(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구분	개 정 전	개 정 후	비고
제1호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제2호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변동없음
제3호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의 유족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또는 유족	

- 용어 수정 및 띄어쓰기 정비
- 신청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란 추가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3. 2~ 3. 22.)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2. 26.(여성가족과-483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2. 26.(기획예산실-300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3. 2.(순천시 공고 제2021-522호)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계법령” 을 “관계 법령”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 을 “각 목”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2항에 따라” 로 한다.

제8조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범위 안” 을 “범위” 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법령” 을 “관계 법령” 으로, “범위 내” 를 “범위” 로,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

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유족” 을 “그 유족” 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유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제13조 본문 중 “제2호” 를 “별지 제2호” 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관계법령” 을 “관계 법령” 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21조 중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신설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 본법 등 국가보훈 <u>관계법령</u>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 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관계 법령</u>----- ----- ----- -----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 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 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라.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2. ~ 4. (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p>1. ----- 각 목----- -----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라.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2. ~ 4. (현행과 같음)</p>
<p>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생 략)</p> <p>② 시장은 <u>제1항의</u> 규정에 의한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 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현 행과 같음)</p> <p>② ----- <u>제1항에 따른</u> ----- ----- ----- -----.</p>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시가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검증 등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

3. (생략)

제11조(명예수당 등 지급) ①·② (생략)

<신설>

제12조(지급대상) ① 제11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시 관내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제15조에 따른 중지 사유 발생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
--- 그 밖에 -----

3. (현행과 같음)

제11조(명예수당 등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급대상) ①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7.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

를」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유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6. -----

-- 그 유족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하는 사람 또

람 또는 유족

②·③ (생략)

제13조(지급신청) 명예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지급의 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 1. 2. (생략)
- 3. 관계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② (생략)

제17조(환수조치)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는 그 유족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지급신청) -----

----- 별지 제2호 -----

-----.

제15조(지급의 중지)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관계 법령-----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환수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라 -----

-----.

제21조(시행규칙) -----
필요-----
-----.

[별지 제1호 서식]

보훈등록번호				[] [] [] [] [] [] []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p>‘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순천시장 귀하</p>							
구비서류 : 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관련 증명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보훈등록번호				[] [] [] [] [] [] []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p>I. 수집에 동의하는 개인정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정보의 범위 및 목적</td> <td>수집처로 및 제공 목적</td> </tr> <tr> <td>국·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상사항 수집</td> <td>신상사항 확인 및 관리 용이</td> </tr> </table> <p>■ 위 사무 처리에 관련하여 C(개인정보 이용·제공 제한)의 등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28조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한 면제에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C(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삭제) 등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제41조에 의한 교육·정보통신·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증명에 동의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이 개인정보는 등 처리는 국·민·공적 또는 법에 의함으로써 5년까지 보유 및 이용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p>								정보의 범위 및 목적	수집처로 및 제공 목적	국·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상사항 수집	신상사항 확인 및 관리 용이
정보의 범위 및 목적	수집처로 및 제공 목적										
국·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상사항 수집	신상사항 확인 및 관리 용이										
<p>‘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순천시장 귀하</p>											
구비서류 : 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관련 증명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1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조정수당 지급 조항 신설(안 제11조제3항)
 -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정비(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구분	개 정 전	개 정 후	비고
제1호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제2호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변동없음
제3호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의 유족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또는 유족	

- 용어 수정 및 띄어쓰기 정비
- 신청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란 추가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3. 2~ 3. 22.)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2. 26.(여성가족과-483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2. 26.(기획예산실-300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3. 2.(순천시 공고 제2021-522호)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계법령” 을 “관계 법령”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 을 “각 목”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2항에 따라” 로 한다.

제8조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범위 안” 을 “범위” 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법령” 을 “관계 법령” 으로, “범위 내” 를 “범위” 로,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

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유족” 을 “그 유족” 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유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제13조 본문 중 “제2호” 를 “별지 제2호” 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관계법령” 을 “관계 법령” 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21조 중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신설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 본법 등 국가보훈 <u>관계법령</u>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 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 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 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라.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2. ~ 4. (생략)</p> <p>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생 략)</p> <p>② 시장은 <u>제1항의</u> 규정에 의한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 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조(목적) ----- ----- <u>관계 법령</u>----- ----- -----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p>1. ----- 각 목----- -----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라.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2. ~ 4. (현행과 같음)</p> <p>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현 행과 같음)</p> <p>② ----- <u>제1항에</u> 따른 ----- ----- ----- -----.</p>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시가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
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
록지정 확인과 검증 등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

3. (생략)

제11조(명예수당 등 지급) ①·②
(생략)

<신설>

제12조(지급대상) ① 제11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시 관내
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당사
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제15
조에 따른 중지 사유 발생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각 호-----

- .
1. (현행과 같음)

2. -----

---- 그 밖에 -----

3. (현행과 같음)

제11조(명예수당 등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훈명
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급대상) ①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7.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

를」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유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6. -----

-- 그 유족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하는 사람 또

람 또는 유족

②·③ (생략)

제13조(지급신청) 명예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지급의 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 1. 2. (생략)
- 3. 관계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② (생략)

제17조(환수조치)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는 그 유족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지급신청) -----

----- 별지 제2호 -----
----- . -----
----- .

제15조(지급의 중지) ① -----

--.

- 1. 2. (현행과 같음)
- 3. 관계 법령-----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환수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라 -----

----- .

제21조(시행규칙) -----
필요-----
----- .

[별지 제1호 서식]

보훈등록번호		[] [] [] [] [] [] [] [] [] [] []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p>'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순천시장 귀하</p>											
구비서류 : 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관련 증명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보훈등록번호		[] [] [] [] [] [] [] [] [] [] []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p>I. 수집에 동의하는 개인정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정보의 범위 및 목적</td> <td>수집처로 및 제공처</td> </tr> <tr> <td>주민등록번호(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 주소 등 신상사항 수집</td> <td>신청인 본인 및 직계존속</td> </tr> </table> <p>■ 위 사무 처리에 관련하여 C개인정보 이용-제공 한도의 등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28조 또는 제33조 제2항에 따른 안내를 갖추려는 것에 동의합니다. C개인정보 및 교육개발정보의 처리 목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제41조에 따른 교육·정보통신·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에 한하여 그 사용 범위를, 이를 증명에 사용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이 개인정보는 등 처리는 국외로 공적 또는 법이 지양으로부터 5년까지 보유 및 이용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p>												정보의 범위 및 목적	수집처로 및 제공처	주민등록번호(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 주소 등 신상사항 수집	신청인 본인 및 직계존속
정보의 범위 및 목적	수집처로 및 제공처														
주민등록번호(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 주소 등 신상사항 수집	신청인 본인 및 직계존속														
<p>'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순천시장 귀하</p>															
구비서류 : 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관련 증명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순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341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제정이유

-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고자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순천시 공영장례 지원대상, 내용,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순천시 공영장례에 관한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순천시 공영장례 업무대행,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순천시 공영장례에 비용 등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2. 26.(여성가족과-481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2. 18.(사회복지과-5354)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2. 25.(기획예산실-294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3. 2.(순천시 공고 제2021-517호)

순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망 당시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장제급여 대상자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례지원금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4.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사용료
5. 화장장 운구료
6. 화장비용(유골함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받은 사망자가 단독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남겨 놓은 금전(유류물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장·통장·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屍), 수사(搜查)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검시, 수사 등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장례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 등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기초수급자 및 무연고자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비용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사망당시 장제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무연고자에게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77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77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77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도 비(30%)	232,500	46,500	46,500	46,500	46,500	46,500
시 비(70%)	542,500	108,500	108,500	108,500	108,500	108,5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산출기초	비고
계	775,000		
기초수급자 및 무연고자 공영장레비 지급	775,000	175명*800천원*5차년도 9명*1,600천원*5차년도	

※ 2021년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시민복지국 사회복지과 과 장 김 미 자 (☎ 749-6180)
생활보장팀장 정 미 자 (☎ 749-6260)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341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제정이유

- 전통선비문화체험과 교육을 위하여 건립한 순천선비문화체험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의 위치 및 기능(안 제1조~제3조)
-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0조)
-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5조)
-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교육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강사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0조)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2. 15. ~ 3. 8.)결과 : 의견서 1건 접수
 - 접수일자 : 2021. 3. 8.
 - 제 출 자 : 순천향교 전교 서진원
 - 제출내용

제 출 내 용	부 서 의 건
<p>제4조 ②항</p> <p>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 운영 법인 또는 단체 선정 시 전통선비문화 체험 교육을 위하여 순천향교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p>	<p>불수용</p> <p>⇒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수탁기관 선정방법) 제①항에 의거하여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p>
<p>제6조 ②항</p> <p>위원회의 위원은 전통문화, 예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정원의 반을 순천향교 유림 지도자로 한다.</p>	<p>불수용</p> <p>⇒ 위원회의 위원을 특정 단체 구성원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p>
<p>제11조 ⑨항</p> <p>간사는 학습관 업무담당 팀장과 순천향교 사무국장 공동으로 한다.</p>	<p>불수용</p> <p>⇒ 향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는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p>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1. 28.(여성가족과-232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1. 21.(평생교육과-885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2. 15.(평생교육과-163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2. 15.(순천시 공고 제2021-388호)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선비문화 체험과 교육을 위하여 건립한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은 순천시 금곡길 51(금곡동)에 둔다.

제3조(기능) 학습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체험 및 교육
2. 서예, 다도, 국악 등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
3. 기타 전통문화 활동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운영) ① 학습관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학습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의 사업계획 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전통선비문화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습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전통문화, 예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학습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등) ①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습관 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학습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제13조(사용료) ①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사용료는 시장이 발부한 고지서에 따라 순천시 금고에 사전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순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선비문화체험학습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세미나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행위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청구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비용) 시장은 학습관의 교육과정상 필요한 프로그램 수강료 및 교육재료비 등 실비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선비문화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강사위촉)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예절 등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순천선비문화체험학습관 사용료(제13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고
선비문화 체험학습관 선비학당(1) *강당(40명)	1회	30,000	○1회 2시간 기준 ※ 하절기 및 동절기 냉난방기 사용시 시간당 5,000원 추가
선비문화 체험학습관 선비학당(2) *강의실(15명)	1회	20,000	

【별지 제1호서식】

순천선비문화체험학습관 사용 신청서

신청자 (단체)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사용목적			연락처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사용인원	명			
사용 시 요구사항				

순천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순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순천선비문화체험학습관 사용료 반환 청구서

시설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은행)		
반환금액	원		
취소사유			

「순천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료 반환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순천시장 귀하

순천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시설물 관리운영, 교육비용, 사용료, 강사수당
- 관련 조문 : 제4조(관리·운영), 제13조(사용료), 제17조(교육비용),

제18조(강사위촉)

- 제4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 : ①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7조 : 시장은 학습관의 교육과정상 필요한 프로그램 수강료 및 교육재료비 등 실비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선비문화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 :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예절 등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함.

○ 선비문화체험학습관 운영 비용, 사용료, 강사수당 등을 추계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397,400	-80,380	-79,880	-79,380	-78,880	-78,880
세입(a)	34,500	6,000	6,500	7,000	7,500	7,500
세출(b)	431,900	86,380	86,380	86,380	86,380	86,380

3-1. 세입 비용추계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계	34,500	6,000	6,500	7,000	7,500	7,500
사용료	27,600	4,800	5,200	5,600	6,000	6,000
수강료	6,900	1,200	1,300	1,400	1,500	1,5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시 비	431,900	86,380	86,380	86,380	86,380	86,38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 (세입-세출)			-80,380
세 출	소계	86,380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관리·운영비 : 26,000 - (공공운영비) 1,500,000원 × 12개월 = 18,000 - (사무관리비) 2,000,000원 × 4회 = 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 3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강사수당 : 18,900 - 35,000원 × 4시간 × 3명 × 45회 = 18,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홍보 비용 : 6,000 - 홍보물 제작 2회 × 200부 × 1,000원 = 4,000 - 홍보영상 제작 2,000천원 × 1회 =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벤치마킹 견학 출장여비 : 480 - 60,000원 × 2명 × 2일 × 2회 	
소계	6,000		
세 입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비학당(1) : 3,600 - 30,000원 × 10회 × 12개월 ▪ 선비학당(2) : 1,200 - 20,000원 × 5회 × 12개월 	
	수강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대학 수강료 : 960 - 60,000원 × 8명 × 2학기 ▪ 그외 교육·체험비 : 240 - 10,000원 × 4인 × 5회 × 12개월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문화관광국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 6753)

문화관광국 평생교육기획팀장 김정숙 (☎ 6754)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1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개정이유

- 입사생 선발과정의 차별 요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지자체 운영 대학생 기숙사 입시생 선발의 공정성 제고

2. 주요내용

- 입사자격 우선순위 기존 4년제 → 2년제 이상 대학으로 변경(안 제5조)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2. 15. ~ 3. 8.)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2. 9.(여성가족과-332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2. 9.(기획예산실-215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2. 15.(순천시 문화관광국 평생교육과 공고 제2021-4호)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1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개정이유

-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주민(장·단기 체류 및 근로계약 등으로 입국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선의의 평등권 부여 및 거시적인 시민 공동체 구현을 위해 지원 기준 확대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국인 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평등권 침해로 보고 재난지원금 지급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권고

2. 주요내용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안 제5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순천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순천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출입국 관리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3. 2. ~ 3. 22.)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2. 22.(여성가족과-434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2. 16.(안전총괄과-2874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2. 23.(기획예산실-282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3. 2.(순천시 공고 제2021-509호)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을 “제10조에 따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1.2호(생 략)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순천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5조(지원대상)1.2호(현행과 같음) 3. ----- 제10조에 따라 ----- -----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안 제5조)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순천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2. 비용추계의 전제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수반되는 사항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150,150	-150,150	-	-	-	-
세입(a)	0	0	-	-	-	-
세출(b)	150,150	150,150	-	-	-	-

* 코로나19 및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추계이며, 향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 시 별도 추계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시 비	150,150	150,150	-	-	-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추계결과 : 150,150천원

○ 긴급재난지원금 : $100\text{천원} \times 1,500\text{명} = 150,000\text{천원}$

○ 상품권 발행비용 : $100\text{원} \times 1,500\text{명} = 150\text{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과장 정학규(☎749-5466)

사회재난팀장 채강묵(☎749-3046)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의안 번호	제341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제정이유

- 연령, 성별, 장애 유무,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실천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제8조)
- 시범사업 시행,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인증제도 운영·지원,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 위원회 설치·운영,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8조)
- 산업 육성, 관계기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2조)

3. 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2021. 2. 16. ~ 3. 8.)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2. 9.(여성가족과-332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2. 3.(도시과-1260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2. 15.(기획예산실-232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2. 16.(순천시 공고 제2021-397호)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순천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민간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장애여부,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등을 말한다.
3. “민간시설물”이란 민간이 시행하는 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용
2. 모든 사람이 손쉽게 이용
3.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 방법 구사
4.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탑재
5.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 구성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조직과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순천시 (이하 “시” 라 한다)가 실시하는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적용 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영역에 적용된다.

1.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에 따른 검토사항
2. 「순천시 경관 조례」 별표에 따른 심의·자문 대상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의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등의 조성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여객시설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등의 조성
5.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의 보도, 횡단보도, 조명, 방호울타리
6.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보도, 횡단보도, 조명, 방호울타리
7.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지정보호구역 및 보호구역내 보도와 도로 부속물
8.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거나 관리 예정인 공공시설물
9. 각종 정보매체,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한 정보서비스 및 시설
10.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8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3. 유니버설디자인 보급을 위한 방향
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5. 유사한 성격의 타 사업과 연계 운용 방안
6. 시 및 시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시범사업 시행)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진흥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또는 시범건축물
2.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3.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제10조(사업지원)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민간시설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시설물의 신설,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2.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확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사업
3. 유니버설디자인과 타 시책과의 연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유니버설디자인 인증)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착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제도 운영·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유니버설디자인센터)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무 지원
2.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에 필요한 교육, 홍보 사업
3.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무
4.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5.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시설의 운영
6. 유니버설디자인 현황·실태 조사 및 분석
7. 민간시설물의 유니버설디자인 촉진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③ 시장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센터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및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민간시설물지원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7.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순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순천시 경관 조례」 제30조에 따른 순천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순천시 경관위원회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 있는 공무원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관련 시민단체의 전문가
4. 도시계획, 건축, 공공디자인, 사회복지, 조경, 도시정책, 도시재생, 과학기술(AI, 데이터 등) 등의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감정·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9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민참여)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보급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론화 과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유니버설디자인 산업 육성)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서비스, 시스템, 콘텐츠 및 건축물 등을 생산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안 제10조(사업지원)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민간시설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시설물의 신설,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2.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확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사업
3. 유니버설디자인과 타 시책과의 연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유니버설디자인 보급 확대 및 민간시설물 확산 추진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활성화 사업 지원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80,000	-10,000	-10,000	-20,000	-20,000	-20,00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80,000	10,000	10,000	20,000	20,000	2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시비	80,000	10,000	10,000	20,000	20,000	2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2021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산출기초	비고
계	10,000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보조	10,000	10,000천원*1개소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안전도시국 도시과 과 장 신 길 호 (☎ 749-6192)

도시경관팀장 장 은 희 (☎ 749-5951)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1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분납 가능 횟수 확대 및 구체화(안 제 5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기준 구체화 및 주민편익시설 면적 포함 (안 제8조~제10조)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2. 1. ~ 2. 22.)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1. 14.(여성가족과-107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1. 11.(기획예산실-34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2. 1.(순천시 생태환경센터 청소자원과 공고 제2021-1호)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완료시” 를 “준공전” 으로, “연2회, 상·하반기로” 를 “연5회 이내로”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제1항 중 “금액으로 한다” 를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 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시설 설치비 산정방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금액으로 한다” 를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 상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시설 설치비 산정방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택지 등을 개발하는 자가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금액 등을 통보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제8조~제10조 관련)

$$\text{설치납부금액} = \text{시설 부지 매입비} + \text{시설 설치비}$$

1. 시설 부지 매입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시설 부지 매입비} = \text{시설 부지 면적} \times \text{부지 매입단가}$$

가. 시설 부지 면적(m²)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다.

$$\text{시설 부지 면적(m}^2\text{)} = [1] + 2] \times 100 \div \text{건폐율(\%)}]$$

1)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시설용량	소요면적
50톤/일 미만	73.2m ² × 시설용량
50톤/일 이상 100톤/일 미만	3,660m ² + 20m ² × (시설용량 - 50)
100톤/일 이상 300톤/일 미만	4,660m ² + 25m ² × (시설용량 - 100)
300톤/일 이상 500톤/일 미만	9,660m ² + 5m ² × (시설용량 - 300)
500톤/일 이상	11,000m ² + 5m ² × (시설용량 - 500)

2) 주민편의시설 면적

시설 부지 면적의 20퍼센트

나. 부지 매입단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면적(m²)당 조성원가. 다만, 설치납부금액 산정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면적당 단가를 적용한다.

2. 시설 설치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시설 설치비} = \text{소각시설 설치비} + \text{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 \text{주민 편의시설 설치비}$$

가. 소각시설 설치비

$$\text{소각시설 설치비} = 1) \div 2) \times 3) \times 4) \times 5) \times 6) \times 7)$$

- 1)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톤)
-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
- 3)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
-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 6)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text{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 1) \div 2) \times 3) \times 4) \times 5) \times 6) \times 7)$$

- 1) 음식물류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
-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
- 3)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
-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 6) 사료화 시설, 퇴비화 시설,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 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퍼센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시부터 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2회,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토록 한다.</p> <p>③ 제2항의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6월 30일, 하반기의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④ (생략)</p> <p>제8조(시설부지 매입 소요 비용의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p> <p>1. (생략)</p> <p>2. <u>부지면적은 시설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u></p>	<p>제5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준 공전----- 연 5회 이내로 ----- -----.</p> <p><삭 제></p> <p>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시설부지 매입 소요 비용의 산정)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시설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u></p>

제9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 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제9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

-----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시설 설치비 산정방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
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
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
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
침(환경부)’ 상의 규모지수를 다음
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
모 1~10톤/일 경우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
모 11~29톤/일 경우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
모 30~49톤/일 경우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
모 50~99톤/일 경우 :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
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 금액으로 하되, 구체
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
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별표 1의 시설 설치비
산정방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제8조 관련)

가. 시설부지 면적

구 분	소 요 면 적	비 고
폐기물 처리 시설	100톤/일 이하	40㎡(12평)/톤 1기 기준 4,000㎡(1,200평) 이하
	100~300톤/일	30㎡(9평)/톤 1기 기준 4,000㎡(1,200평) 이하
	300~500톤/일	20㎡(6평)/톤 1기 기준 4,000㎡(1,200평) 이하
관리동	500톤/일 이하	10~15㎡/톤 (3~4.5평) 1기 기준 4,000㎡(1,200평) 이하
	500톤/일 초과	330㎡(100평) 작업인원 35~50명 기준
세차동 등 기타 시설	500톤/일 이하	500㎡(150평) 작업인원 50~70명 기준
	500톤/일 초과	330㎡(100평) -
건폐율	40% 이하	계획관리지역 기준

나.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10m 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20m 이상

\square 총 부지면적 = 시설부지 면적(가) + 주변녹지대 면적(나)

[별표 1]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제8조~제10조 관련)

설치납부금액 =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설치비

1. 시설 부지 매입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부지 면적(가) × 부지 매입단가(나)

가. 시설 부지 면적(㎡)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다.

시설 부지 면적(㎡) = [1] + 2] × 100 ÷ 건폐율(%)

1)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시설용량	소요면적
50톤/일 미만	73.2㎡ × 시설용량
50톤/일 이상 100톤/일 미만	3,660㎡ + 20㎡ × (시설용량 - 50)
100톤/일 이상 300톤/일 미만	4,660㎡ + 25㎡ × (시설용량 - 100)
300톤/일 이상 500톤/일 미만	9,660㎡ + 5㎡ × (시설용량 - 300)
500톤/일 이상	11,000㎡ + 5㎡ × (시설용량 - 500)

2) 주민편의시설 면적

시설 부지 면적의 20퍼센트

나. 부지 매입단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면적(㎡)당 조성원가. 다만, 설치납부금액 산정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면적당 단가를 적용한다.

2. 시설 설치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 설치비 = 소각시설 설치비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가. 소각시설 설치비

소각시설 설치비 = 1) ÷ 2) × 3) × 4) × 5) × 6) × 7)

- 1)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톤)
-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
- 3) 택지 등의 수용계획 인구
-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
-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 6)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톤당 설치단가
-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
1) ÷ 2) × 3) × 4) × 5) × 6) × 7)

- 1) 음식물류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
-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

는 관할구역의 인구

- 3) 택지 등의 수용계획 인구
-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
-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 6)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 톤당 설치단가
-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퍼센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2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 사용자의 불합리한 금전 부담 완화 및 불편해소 권고

2. 주요내용

- 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설(안 제33조)
 - 수도사용자 등이 과도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 등으로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가능
- 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폐지 단서 신설(안 제43조)
 - 정수처분 해제 후 수도물 공급 재개 시 부과되는 수수료 폐지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수도법」 제38조 및 제72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2. 15. ~ 3. 8.)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2. 9.(여성가족과-333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2. 29.(기획예산실-119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2. 15.(순천시 공고 제2021-364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③ 시장은 수도사용자등이 과도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 등으로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도사용 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정수처분 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3조(납기와 징수 방법) ①~② (생 략) <u><신 설></u></p>	<p>제33조(납기와 징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수도사용자등이 과도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 등으로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u></p>
<p>제43조(급수정지 처분)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u><단서 신설></u></p>	<p>제43조(급수정지 처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다만, 수도사용 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정수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2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개정이유

- 순천소형경전철(스카이큐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습지-국가정원-소형경전철’ 통합발권 도입
- 차량분류기준에 부합한 주차장 이용요금 기준 정비
- 안정적인 순천만습지 운영을 위한 입장 및 행위 제한 내용 정비
-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2. 주요내용

- ‘습지-국가정원-소형경전철’ 통합권에 관한 사항(안 별표 1)
- 주차장 이용요금 기준 정비(안 별표 4)
 - (수정) 중형구간 삭제 및 소형 및 대형 기준 정정(안 별표 4)
- 입장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습지 내 통행시 사고유발 위험이 있는 탈 것(자전거, 키포드 등)의 기준 구체화
-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사전 허가없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 사용 제한
-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불편 요인 제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안 제15조, 안 제19조)
 - 대관 허가 및 변경 신청 제한 완화(안 제12조)
 - 책임면제(불공정 요인)조항 삭제(안 제15조)
 - 환불 금액 조정(안 제19조)
-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별표 3)
 - 촬영료 책정 기준 재정립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2. 1. ~ 2.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2. 22.(여성가족과-427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1. 26.(기획예산실-157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1. 25.(순천시 공고 제2021-201호)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바퀴달린 신발을 포함하여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바퀴가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자. 단 유모차, 휠체어, 공무수행 및 습지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를 관리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

제12조제2항 중 “7일전” 을 “사용 전” 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4호 중 “사용료의 100분의 50” 을 “사용료의 90%” 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사용 개시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다음 날 사용료의 10%와 사용한 기간만큼의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별표1, 별표3,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람료(제5조 관련)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통합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소형경전철)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유아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14,000원	12,000원	8,000원	5,000원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11,000원	8,000원	6,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6,000원	5,500원 (단체:4,500원)	4,000원 (단체:3,000원)	무료
순천시민 1년회원권	10,000원						
1년권	30,000원	20,000원		10,000원			

- ※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및 기타 중복 할인 불가
 2. 순천만습지 및 순천만국가정원 무료입장객에 대해서는 통합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비 고>

1. “유아”란 36개월 이상 ~ 만 7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생 및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사회복지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6.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7. “1년권”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8. “순천시민 1년회원권”이란 순천시민이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별표 3]

사 용 료(제13조 관련)

습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토·공휴일	
세미나실 생태교실	2시간 (기본사용시간)	20,000원	30,000원	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기획전시실	1일 기준	30,000원	40,000원	
부대시설 (냉·난방)	1시간 기준	5,000원	5,000원	

※ 1일 기준은 09시에서 18시로 한다.

※ 연습 및 리허설, 행사준비 및 철수를 위한 시간 모두 사용시간에 포함된다.
단, 이를 위한 사용일 전날 및 다음날은 50% 감면한다.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구 분	기준시간(4시간)	초과시간(1시간 당)	1일	비 고
사용료	300,000	50,000	1,000,000	관리자와 사전협의된 인터뷰는 제외

※ 사용시간은 스태프, 장비, 세트, 소도구 등의 입장시각부터 퇴장시각까지로 한다.

※ 1일은 0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한다.

[별표 4]

주 차 료(제26조 관련)

구 분		주차료	비고
습지시설 주차장	이륜차	500원	
	소 형	3,000원	- 승용 15인승 이하 - 화물 2.5톤 이하 ※경차(1,000cc미만) 1/2 경감
	대 형	5,000원	- 승용 15인승 초과 - 화물 2.5톤 초과

※ 주차구획선 1면 기준요금이므로 크기가 다른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구획선 점유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입장제한) 시장은 시설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p> <p>1.~7. (생략)</p> <p>8. <u>자전거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자</u></p> <p>9. (생략)</p> <p>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4. (생략)</p> <p><u><신 설></u></p> <p>5. (생략)</p> <p>제12조(사용허가) ① (생략)</p> <p>② 제 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자</p>	<p>제8조(입장제한) ----- ----- ----- -----.</p> <p>1.~7. (현행과 같음)</p> <p>8. <u>바퀴달린 신발을 포함하여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자. 단 유모차, 휠체어, 공무수행 및 습지 유지·관리를 위해 사전 협의 된 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u></p> <p>9. (현행과 같음)</p> <p>제9조(행위의 제한) ① ----- ----- -----.</p> <p>1.~4. (현행과 같음)</p> <p>5. <u>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를 관리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제12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는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7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5조(사용제한)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 1일전에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신설>

----- 사용전-----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용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19조(사용료의 반환) -----

-----.

1.~3. (현행과 같음)

4. -----

---- : 사용료의 90%

5.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사용 개시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별표 1]

관람료(제5조 관련)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순천시민 1년회원권	10,000원		
1년권	30,000원	20,000원	10,000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할인 등 기타 중복 할인은 불가함

< 비 고 >

<신 설>

1.~2. (생략)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7. (생략)

[별표 1]

관람료(제5조 관련)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통합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소형경전철)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유아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14,000원	12,000원	8,000원	5,000원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11,000원	8,000원	6,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6,000원	5,500원	4,000원	무료
순천시민 1년회원권					(단체 :4,500원)	(단체 :3,000원)	
순천시민 1년 회원권	10,000원			무료			
1년권	30,000원	20,000원	10,000원				

※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할인 등 기타 중복 할인은 불가함
2. 순천만습지 및 순천만국가정원 무료입장객에 대해서는 통합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비 고>

1. “유아”란 36개월 이상 ~ 만 7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3. (현행 제1호~제2호와 같음)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8. (현행 제4호~제7호와 같음)

[별표 3]

사용료(제14조 관련)

습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토공휴일	
세미나실 생태교실	2시간 (기본사용시간)	20,000원	30,000원	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기획전시실	1일 기준	30,000원	40,000원	
부대시설 (냉난방)	1시간 기준	5,000원	5,000원	

※ 사용료 1일 기준은 09:00 ~ 18:00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드라마 및 영화 촬영 등

구 분	영 화	드 라 마	영화, 드라마 이외의 촬영	예 식	비 고
사용료	1,000,000원	500,000원	300,000원	200,000원	1일 기준

※ 사용료 1일 기준은 00:00 ~ 24:00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별표 3]

사용료(제13조 관련)

습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토공휴일	
세미나실 생태교실	2시간 (기본사용시간)	20,000원	30,000원	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기획전시실	1일 기준	30,000원	40,000원	
부대시설 (냉난방)	1시간 기준	5,000원	5,000원	

※ 1일 기준은 09시에서 18시로 한다.

※ 연습 및 리허설, 행사준비 및 철수를 위한 시간 모두 사용시간에 포함된다. 단, 이를 위한 사용일 전날 및 다음날은 50% 감면한다.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구 분	기준시간 (4시간)	초과시간 (1시간 당)	1일	비 고
사용료	300,000	50,000	1,000,000	관리자와 사전협의 된 인터뷰는 제외

※ 사용시간은 스태프, 장비, 세트, 소도구 등의 입장시각부터 퇴장 시각까지로 한다.

※ 1일은 0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한다.

[별표 4]

주 차 료(제25조 관련)

구 분		주차료	비고
정원시설 주차장		무료	
공원시설 주차장	이륜차	500원	
	소 형	3,000원	경승용차 (1,000cc미만) 50/100 경감
	중 형	4,000원	11인승 ~ 24인승
	대 형	5,000원	25인승 이상

※ 주차권을 제시하는 경우 당일에 한해 순천만습지 내 판매시설 이용 시 1,000원을 할인한다.(단, 이륜차는 제외)

[별표 4]

주 차 료(제26조 관련)

구 분		주차료	비고
습지시설 주차장	이륜차	500원	
	소 형	3,000원	- 승용 15인승 이하 - 화물 2.5톤 이하 ※경차(1,000cc미만) 1/2 경감
	대 형	5,000원	- 승용 15인승 초과 - 화물 2.5톤 초과

※ 주차구획선 1면 기준요금이므로 크기가 다른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구획선 점유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관람료

- 비용발생 요인 : 소형경전철 통합권 운영
- 관련 조문 : 별표1 관람료(제4조 관련)

구분	단 일 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통 합 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소형경전철)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유아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14,000원	12,000원	8,000원	5,000원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11,000원	8,000원	6,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6,000원	5,500원 (단체:4,500원)	4,000원 (단체:3,000원)	무료
순천시민 1년회원권	10,000원						
1년권	30,000원	20,000원	10,000원				

주차료

- 주차요금 구간 조정에 따른 주차료 수입금 감소(별표4)
- 관련 조문 : 별표4 주차료(제26조 관련)

구분	주차료	비고	
습지시설 주차장	이륜차	500원	
	소형	3,000원	- 승용 15인승 이하 - 화물 2.5톤 이하 ※경차(1,000cc미만) 1/2 경감
	대형	5,000원	- 승용 15인승 초과 - 화물 2.5톤 초과

2. 비용추계의 전제

관람료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함
- 통합권 발권자 수는 4년간 평균 입장객 수의 1%로 산정
 - 습지~문학관역 이동수단 마련시 기대값 1%로 산정
- 평균 입장료는 통합권-단일권 차액의 83%로 산정
 - 기존 스카이큐브 성인탑승료(8,000원) 대비 5년간 평균 탑승료 (6,680원) 비율 = 83% * 할인 탑승권 반영
- 통합발권 홍보 및 문학관역 ~ 순천만 습지 도보이동 구간 이동 수단 마련으로 통합권 수입 매년 2% 증가 산정

주차료

- 3년 평균 주차장 중형요금 과금 횟수 적용
 - 2018년 : 7,229대, 2019년 : 7,253대, 2020년 : 3,420대
 - 평균 : 5,967대

3. 비용추계의 결과

관람료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390,062	74,954	76,453	77,982	79,541	81,132
세입(a)	390,062	74,954	76,453	77,982	79,541	81,132
세출(b)	0	0	0	0	0	0

주차료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세입	△29,835	△5,967	△5,967	△5,967	△5,967	△5,967

※ 1년 평균 중형차 주차횟수 : 5,967대 × (4,000원 - 3,000원) = 5,967천원

